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10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강민국 · 윤한홍 · 김정재
안철수 · 김기현 · 김선교
배준영 · 서일준 · 권영세
김도읍 · 한기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대등한 지위 보장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납품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등은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업능력의”를 “사업능력 및 사업규모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능력 및 사업규모의 격차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품업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제외) ① (생 략)	제3조(적용제외) ① (현행과 같 음)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한다.	②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u>사업능력의 격차</u>	3. ----- ----- <u>사업능력 및 사업규 모의</u>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능 력 및 사업규모의 격차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u>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자</u> <u>(「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u> <u>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u> <u>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u> <u>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u> <u>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u> <u>해당하는지 여부</u>
	2. <u>납품업자등이 「독점규제 및</u>

<u><신 설></u>	<u>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u> <u>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u> <u>에 해당하는지 여부</u>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u> <u>호의 사항에 따른 판단에 대한</u> <u>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사항을</u> <u>정하여 고시한다.</u>
--------------------	---